

과태료의 부과기준

(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1.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가.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1)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)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) 손실거래명세서 4)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나.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서: 해외부동산 취득·투자운용(임대) 및 처분 명세서	법 제176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65조의3 제2항제1호	건별 500만원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(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)
2. 법 제16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가.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1)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)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) 손실거래명세서 4)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나.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서: 해외부동산 취득·투자운용(임대) 및 처분 명세서	법 제176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65조의3 제2항제2호	건별 500만원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(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)
3. 법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177조제1호	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

4. 법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.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한 명령 나. 그 밖의 명령	법 제177조제2호	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20(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)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20(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) 건별 50만원
--	-------------------	--